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403-1023749
신청일	2024-03-27 15:41:23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참여자치21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참여자치21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입장표명 요청의 건 (광주환경공단)
내용	<p>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참여자치21은 2023년 10월 30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에 대한 문제와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는 2023년 11월 2일 참여자치21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p> <p>3. 2024년 3월 18일 광주동부경찰서에서는 귀 기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참여자치21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시도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p> <p>5. 참여자치21은 추가적인 공론화, 법률대응, 인권기구 진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귀 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4월 3일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책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p>
첨부 파일	[공문] 참여자치21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입장표명 요청의 건 (광주환경공단).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광주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처)
------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3-0945036
 접수일 2024-03-27 17:34:00
 담당자(연락처) 박성용 (062-603-5219)
 처리예정일 2024-04-04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4-04-03 18:00:38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활동과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금까지 공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물론,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의 취지와 본래의 의도를 찾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 왔습니다.

공단의 입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득이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수단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10월 30일 발표한 참여자치21의 성명서에는 "김병수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계약이 강요되었고, 이미 체결된 계약이 경영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 여부에 관한 문제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공단으로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사장내정자 개인은 물론 공단 소속 직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김병수 이사장 내정(2023. 10. 25.)부터 참여자치21의 성명서 발표(2023. 10. 30.) 전까지는 극히 짧은 기간인데도 내정자 신분으로 계약과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변경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간단한 노력으로도 사실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이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후 공단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한 여러 노력으로 귀 단체에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진위파악이 되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당시 이사장 내정자와 공단에 대해 유감표명 등 최소한의 명예 회복의 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감시와 비판은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나, 무고하게 침해되는 법익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동일한 주의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